苫小牧港 (도마고마이 항) 에 입항하는 신장 각위 (各位)

苫小牧海上交通安全協議会 (도마고마이 해상교통안진협의회) 苫小牧海上保安署 (도마고마이 해상보안서) 苫小牧港管理組合 (도마고마이항 관리조합)

도마고마이항에 있어서, 항내 (港内) 및 경계 (境界) 부근에 있어서의 신박고통의 안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사관계관청 (海事関係官庁) 및 해사관계자가 모여, 도마고 마이항에 출입항하는 신박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결징했으므로, 이 사항을 지켜 주실 것을 바람과 동시에 결징사항을 알려드리는 바 입니다.

- 1. 관제신호 (管制信号) 및 출입항의 기본 (基本)
 - (1) 관제신호
 - 가. 출입항 하는 신박에 관해서는, 예정시각을 신호소 (信号所) 에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또는, 변경 할 경우도 동일하다.
 - 나. 총 톤수 10,000톤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및 배의길이가, 200 미터 이상인 대형선이 출입항 할 때는, 선박고통의 제한 (제 4신호) 에 따라 출입항 하는 것 으로 한다.
 - 다. 앞의 < 나> 항예, 해당하는 신박이외의 대형신 (배의 길이 170미터 이상 200미터 미만) 의 < 소다 그루프 (group) > 및 < 하루미 (晴海) > 부두에, 이착안 (離着岸) 할때는, 디음사항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 (가) 뷋머리를 항구 입구쪽으로 향하고 착안 할 경우는, 제 4신호에따라 입항하는 것으로 한다.
 - (나) 뱃머리를 항구 입구 반대쪽으로 향하고 착안 한 후,출항 할 경우는,제 4신호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동 신호발신 (同信号発信) 에 따라 안벽에서 떠나, 신 수회진 (船首回転) 해역에서, 소정 (所定) 의 동작이 완료한 것을, 관제관이 직접확인, 혹은, 레다 등으로확인한 시점 (時点) 에서, 동 신호를 해제한다.
 - (2) 출입항 및 항내이동
 - 가. 동일신호 (同一信号) 로,출항하는 선박은, 항구 입구 가까운 곳에서, 출항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나. 선박고통의 제한 (제 4신호) 이, 해제 또는, 아침에 일제히 입항하는 경우에는, 항구 입구 가까이 있는 신박부터 입항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단, 동일 장소에서 입항하는 경우는, 항구의 안쪽을향하는 신박부터, 순서로 입항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다. 닛게이 (日軽) 중앙 부두, 동 부두 동쪽에, 입항 착안하는 대형선 (배길이 170 미티 이상 200미티미만) 은, 원칙적으로, 선수를, 항구 입구 반대 쪽으로 한다. 부득한 사징으로, 선수를 항구입구 쪽 으로 향하고 착안 하는 경우는, 입항선의 제일 후방에서 입항하는 것으로 한다. 단,제1구 (1区) 를 향하는 선박이 없는 경우는, 입항선의 제일 후방에서, 착안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라. 2구 (2区)에서 1구로, 이동하는 선박은, 입항 신호헤 따라, 이동하되, 항구 입 구에 입항신이 없을때에 한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한다.
- 마. 1 구에서 2구로 이동하는 신박은, 출항 신호에 따라 이동하되,
 2 구내에 출항신이 없을때에 한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한다
- 바. 관제대상 밖의 신박은, 관제신호에 따르고있는 신박의 진로를, 방해함이 없도록, 항행하는 것으로 한다.
- (3) 출입항에 대한 주의 (注意)
 도마고마이항은, 남동풍과 파도의 영향을 받기쉬운 곳이므로, 출입항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 2. 짙은 안개 등으로, 시계불량시 (視界不良時) 의 기본
 - (1) 시계가, 500 미터 이상 1,000 미터 이하 인 경우는, 〈출입항주의〉로 한다.이 경우, 관제대상 밖의 신박이라 하더라도, 관제신호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2) 시계가, 300미터 이상 500미터 이하 인 경우는, 〈출입항중지〉로 한다.
 단, 위험물을 적재한 신박 이외의 신박은, 항로경계신(航路警戒船)을 배치하여, 출입항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관제대상 밖의 신박은, 관제신호에 따 라 항로 경계신을 배치하여, 출입항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3) 시계가, 300 미터 이하 인 경우는, 모든 선박의 출입항을 중지하기로 한다. 단, 긴 급한 경우로, 사진에 항장(港長)의 지시를 받은 선박은 제외 한다.
- 3. 수로안내인 (水路案内人또는, 빠이롯트) 의 승선
 - (1)
 - 가. 총 톤수 6,000톤 미만 인 신박에는,빠이롯트의 승신을 추장 (推奨) 할것.
 - 나. 총 톤수 6,000톤 이상 인 신박에는, 직극적으로 빠이롯트를 승선 시킬 것. 단, 체리, 내항징항신 (자동차 전용신, ro/ro방식,콘테이너, 탱커 등) 및 도마고마이 항에, 항상 출입항 하는 신박 으로써, 당 항구의 항만 사정을 잘 알고있는 신박 에 관해서는, 그 신장의 판단에 일임 할 수 도 있다.
 - (2) 제 4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신박에는, 빠이롯트의 승신을 의무 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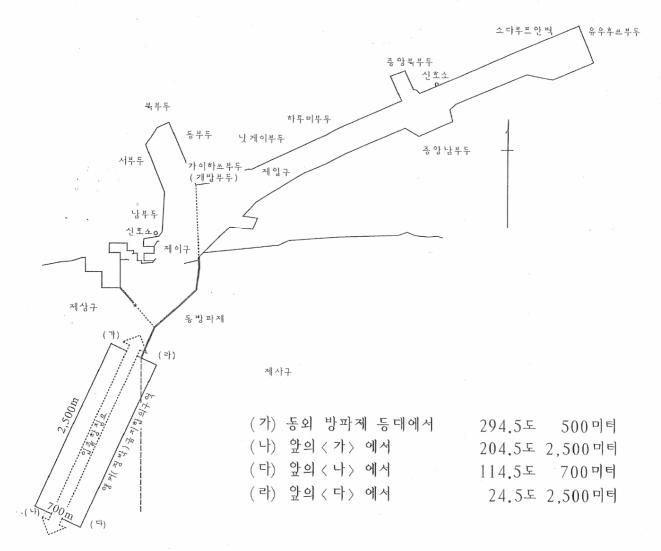
4. 예신 (曳船) 의 원조 (援助)

- (1) 직당한 트러스트 마력 장비를 갖추고 있지않은 신박
 - 가. 총 톤수 2,000톤 이상 6,000톤 미만 인 신박은, 1척 이상의 예신을 사용하는 것이,바람직 하다.
- 나, 총 톤수 6,000톤 이상 인 신박은,적극직으로, 2척 이상의 예선을 사용 할 것.
- (2) 트러스트 마력 장비를, 갖추고 있는 신박이라 하더라도, 흘수 제한신 (吃水制限船)
 으로써, 신수회진을 해야 할 경우, 또는, 강한 바람이 불 때에 있어서는, 직당한
 마력의 예신 1칙 이상을, 직극직으로 사용 할 것
- (3) 서 부두 (西埠頭) 의 이북 (以北) 안벽에, 이착안 (離着岸) 하는 총 톤수 6,000톤 이상 인 신박으로써, 신수회전을 해야 할 경우는 동 부두 (東埠頭) 안벽의 공사기간 (工事期間) 중에 한하여, 시계불량시 (시계가 300미터 이상 500미터 이하 인 경 우) 에는, 예선 1 측을 적극적으로, 사용 할 것.

5. 앵커 (정박) 에관한 기본

- (1) 앵커 (징박)
 - 가. 3구, 4구에 앵커하는 선박은, 선명, 앵커지점, 닻 올릴 예정 시각 및 동외방파제 (東外防波堤) 등대 통과 에정시각 등을, 신호소에 통보 하는 것으로 한다.
 - 나. 남쪽에서 남동풍이, 강하게 불고, 날씨가 거칠 때에, 방파제 밖에서, 앵커하는 것 은,닻이 떠 내려 갈 위험과 닻 줄이 절단 (切断) 될 위험이 있으므로,가능한 방파제 밖에서 앵커 히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 한다.
- (2) 앵커 금지

항구 입구 부근은, 선박이 집중히는 해역이며, 이 해역에 있어서의 출입항 선박의 안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네 지집 (地点) 을 순서로, 이은 선에 의해, 둘러 싸인 해역 (항구 입구에서 앞 바다에 이르는 항로통) 은, 앵커 하지 않는 것 으로 한다.



6. 주의환기 (注意喚起) 신호 등
1 구에서 출항하는 신박은, 개발부두 (훼리부두) 전면 부근에서는, 길게 기적을 한번 울리 든가, 또는, 싸이롕 신호 등을 행 하는 것으로 한다. 2 구에서 출항하는 신박으로써, 이 신호를 들었을 때는, 기적을 길게 한번 울리든가, 또는, 싸이렝으로 응답 할 것.

7. 무신가 (無線機) 에 의한 연락 설정 출입항 신박은, 무선기 (vhf, ch16) 를, 항상 칭취하고, 선박 상호의 움직임 파악에 노력 할 것.

> 苫小牧海上交通安全協議会 도마고마이해상교통안진협의회

事務局 苫小牧海上保安署内 사무국 도마고마이해상보안서내

苫小牧市港町1丁目6番15号 도마고마이시 미나도마치 1-6-15

진화 0144-36-4999 FAX0144-36-7407

1993년 12월